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이향순)

가. 제안이유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동탄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 운영의 위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시설관리·운영: 시설관리, 조직운영 전반
- 실시사업
 - 사례 관리 기능사업(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 서비스제공 기능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등)
 - 지역조직화 기능사업(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등)
- 경로식당 운영, 기타 시책 추진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명: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 시설규모: 1,032.51㎡(지상1층~2층)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지상2층	사무실, 관장실, 세미나실, 꿈키움터, 집단상담실, 개별상담실, 생각키움카페, 배움터3, 배움터4
지상1층	로하스식당, 공감나눔카페, 음악교실, 건강키움터, 레인보우터,울림터, 배움터1, 배움터2

○ 복지관 전경



□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
- 위탁자의 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조례5조)

☐ 기타사항

☐ 위탁운영 원칙

- 토지 및 건물사용 : 무상사용
- 지원예산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향후 5년간 민간위탁금 예상액

(단위:천원)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5,636,956	1,083,189	1,104,852	1,126,949	1,149,488	1,172,478

☐ 위탁시설 조직구성 및 시설구성

- 인력구성: 19명(정규직15명, 계약직4명)
- 조직구성: 1부 5팀 (관장-부장-팀장-팀원)

동탄치동천종합복지관						
관장	부장	행정지원팀	주민지원팀	장애인활동지원팀	마을사업팀	돌봄사업팀
1	1	3	5	2	4	3

☐ 향후 추진계획

- ☐ 2023. 9.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 2023. 10. 수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 2023. 11. ~ 12.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등
- ☐ 2024. 1.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 본 동의안은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시설인 만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 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가. 제안이유

- 2023. 7. 31.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종기 도래 및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해당으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 상위법 위반 조항, 오자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 재원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3조)
 - 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기금 재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이 중복되고, 조례 제3조제6호의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은 법령과 다르게 추가 규정하므로 상위법 위반 조항에 해당함.
-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관한 조항 변경 (안 제5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으므로, 조례에 의무적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는 조문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 조례 조항에 기재된 「화성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후 제정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조문 오자 수정 (안 제19조제2항제1호)

- 융자금의 용도와 관련한 조항으로 ‘제13조’가 아닌 ‘제16조제1항 각 호’와 관련이 있어 명시된 관계 조항을 변경함.

○ 존속기한 삭제 (안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자활기금에 해당하므로 존속기한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방식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어야 하는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본 안건의 변경되는 조문 간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자활기금에 해당함에 따라, 존속기한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를 삭제하여 향후 자금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가. 제안이유

- 청년의 역량개발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업 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 능력 등의 개발 변경 (안 제20조)
 - 청년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 마련
- 청년의 고용확대 등 변경 (안 제21조)
 - 청년면접사진촬영 지원 근거 마련
- 청년의 주거안정 등 변경 (안 제22조)
 -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급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골자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자기개발비용, 취업을 위한 사진촬영비용, 월차임 등 주거안정비용의 지원임.

- 검토결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정착하는데 본안의 지원사업들이 향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 그간 추진 중인 자기개발비용 및 취업비용 지원사업과는 달리, 월차임 등 주거안정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중장년 지원사업 (안 제4조)
-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안 제5조)
-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와 위탁규정·중장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 청년과 노인 관련 복지사업이 상대적으로 완전한 것에 비해, 인구구조에서 청년·노년층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해당 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본 안건과 같은 기본법 성격의 조례 입안을 통해 향후 맞춤형 사업 개발과 다차원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가. 제안이유

- 2022. 8. 31. 6개 市 시장협의회 결과 군포시 운영 참여가 결정되고 군포시 건립분담금이 확정되어, 6개 市 의회에서 군포시 참여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2023. 9. 1. 7개 市 공동운영 시작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정의 변경 (제2조)
- 사용료의 감면 등의 자격 변경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 실무협의회의 구성의 개정 (제20조제2항)
- 관내자격 개정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 6개시 외에 새롭게 군포시가 함백산 추모공원의 운영참여 당사자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발의된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기존에 제출되었던 협약안의 내용과 본 안건의 조문 등이 상위(相違)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관광진흥과장 채민우)

가. 제안이유

- 「온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온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 단순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6조)

- 제2조 온천법 시행령 조문 단순변경
- 제6조 온천법 시행령 조문 단순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의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피허가자에 대한 정의 및 공급계약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입법목적이 단순조문 변경에 따른 현행화로서 상위법령과 본안의 변경되는 조문이 상위(相違)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전성균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시설인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특별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진 미디어 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음.
- 나아가 개정의 기회에 전체 규정을 재정비하기도 하였음.

나. 주요내용

- 추가되는 시설 및 강좌에 대한 사항 (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특별무료강좌 개설에 그 취지가 있으며,
- 검토결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화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목적과 방향성이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책임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김미영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제정안은 예술성이라는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사회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예술인들에게 더 나은 창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예술인 기회소득의 개념적 정의 (안 제2조)
- 일정소득의 기준 (안 제3조)
- 기회소득 지급대상 (안 제6조)
- 조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중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경기도와 화성시 차원에서 일정부분의 소득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부칙상 금년 12월 31일로 조례의 한시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사업계속 등 예측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이용운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용운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을 관내 중학교까지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의 일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관내 지리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각급학교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통학버스 지원대상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등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만 통학버스를 지원하던 사업에 중학생을 추가지원 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는 동시에, 시장의 의무 중 통학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통학버스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보건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선택 예방접종의 종류(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금액(안 제4조)
- 비용의 청구(안 제5조)
- 피해구제 안내(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인플루엔자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시장이 수립하는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백신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피해구제 안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효능이 더욱 좋은 백신개발의 가속화로 인하여 감염병 관련 의약품 소비자로 하여금 백신 선택의 폭을 확대함에 있어 과도한 가계부담을 방지하고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접종대상자 및 백신 선택폭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수요추계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9. 송선영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제정안은 관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심신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적 자치 법규를 마련하려는데 제정의 일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시기별 각종 보건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 질병 예방 치료 등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관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안 으로, 지원사업으로서 신체활동·정신건강 증진, 흡연·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접종, 월경곤란증 치료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향후 본 조례안의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이자 생애주기 상 가장 건강하여야 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수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